

식량안보 가치와 현주소, 대응 방향 정책토론회

일시

2026. 8. 12.(수) 14:00~16:00

장소

aT센터(양재) 세계로룸III(3층)



KREI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량안보 가치와 현주소, 대응 방향 정책토론회



PROGRAM

시간	식순	세부내용
14:00~14:10	개회사	한두봉(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
	축사	서삼석(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14:10~14:30	주제발표	① 식량안보 지표 개발 결과와 식량안보의 가치 유찬희(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14:30~14:50		② 식량안보 위기 대응 시스템 구축을 위한 과제 승준호(한국농촌경제연구원 곡물경제연구실장)
14:50~15:50	토론	좌장 김윤식(경상국립대학교 교수)
		토론 김태훈(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영준(강원대학교 교수)
		윤 명(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강정현(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사무총장)
15:50~16:00	폐회	김동현(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장)

식량안보 가치와 현주소, 대응 방향 정책토론회



CONTENTS

발제 ①

식량안보 지표 개발 결과와 식량안보의 가치 1

유찬희(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발제 ②

식량안보 위기 대응 시스템 구축을 위한 과제 15

승준호(한국농촌경제연구원 곡물경제연구실장)

발제 ①

식량안보 지표 개발 결과와 식량안보의 가치

유찬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식량안보 지표 개발 결과와 식량안보의 가치



2026.8.12.

유찬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목차

- 01 식량안보의 중요성과 가치
- 02 한국형 식량안보 지표 개발 결과

01 식량안보의 중요성과 가치

1. 식량안보, 왜 필요한가?

1 낮은 식량 자급률



2 높은 수입 의존도 + 국제 시장 불안정성



3 기후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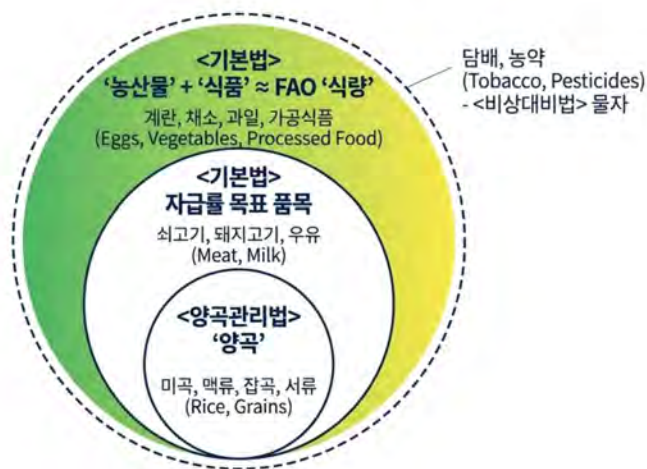


4 경기 여건에 따른 생산자 - 소비자 부담 증가



01

2. 식량과 식량안보,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02

2. 식량과 식량안보,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식량 (Food)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과 같은법
제3조7호의 식품으로서 국민이 생존과
생활을 위하여 섭취할 수 있는 것

*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임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는 식품 중 국민이
생존과 생활을 위하여 섭취할 수 있는 것

기본법의 농수산물/식품 정의를 포괄하고
FAO 정의와 정합성 확보

식량안보 (Food Security)

모든 국민이
활동적이고 건강한 생활을 위해
충분하고 안전하며 영양가 있는 식량에
물리적 또는 경제적으로
언제나 접근 가능한 상태

안보를 '상태'로 정의하는 국내 입법례 따름
+ 지속가능성/주체성 등 최신 FAO 개념 반영

제안된 정의는 국내 법체계의 통일성을 유지하면서 국제 표준을 충실히 반영함

03

3. 식량안보 등 농업의 공익적 가치,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 식량안보는 그 자체로 중요하고 함께 발전되는 공익 기능 가치까지 고려 필요

- 식량안보의 경제적 가치 : 국내 공급기반 확보 + 해외 도입기반 확보 + 식량 접근성 보장 (3 축)
- 농업의 공익적 가치 : 국내 공급기반 확보 과정에서 발전되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 (보조 축) 평가



04

3. 식량안보 등 농업의 공익적 가치, 어느 정도인가?

✓ 식량안보와 농업의 공익적 기능의 경제적 가치는 **연간 최대 31.6조 원**

i 일부 주요 품목 중심으로 식량안보 가치를 평가, 공익 기능 역시 일부 기능의 가치를 평가 → 실제 가치는 추정 결과보다 클 수 있음

1축 (국내 공급 기반)	2축 (해외 도입 기반)	3축 (식량 접근성 보장)	보조 축 (지속가능성)
평가 방법 가상가치평가법	평가 방법 가상가치평가법	평가 방법 부분균형모형	평가 방법 대체비용법
가치 평가 금액 4조 371억 ~ 4조 528억 원	가치 평가 금액 1조 8,939억 ~ 1조 9,070억 원	가치 평가 금액 2조 559억 원 ~ 4조 1,367억 원	가치 평가 금액 20조 8,928억 ~ 21조 5,382억 원

05

3-1. 국내 / 해외 공급 기반 유지 가치

 **분석방법 (CVM 적용):** 시장가격을 통한 가치 측정에 한계, 가상적 정책 상황을 제시하고 국민의 지불의사액 추정

 **분석 결과:** 생산 기반 확보, 비축, 수입안정성 확보에 따른 경제적 가치 합계는 **약 5.9 조 원**

구분	연간 경제적 가치	
	모델 1 (인구 · 사회학적 변수만)	모델 2 (인구 · 사회학적 + 인식 변수)
1 축	생산 기반 확보	2 조 5,755 억 원
	공공 비축	1 조 4,616 억 원
2 축	수입 안정성 확보 (해외 개발)	1 조 9,070 억 원
합계		5 조 9,598 억 원

9

3-2. 식량 접근성 보장 가치



 **분석 개요:** 농축산물 수급 충격 발생 → 가격 상승 → 생산자 이익 (수입 증가), 소비자 농산물 구입 비용 증가 (지출 증가)
→ 소비자 지출이 더 크면 사회적 비용 발생 가정

 **분석방법 (KREI-KASMO):** 생산액이 큰 주요 품목 중심으로 수급충격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사회적 비용 추정
(생산액 비중 고려 시 주요 품목 외 품목을 추가해도 결과 변동은 제한적)



07

3-2. 식량 접근성 보장 가치

✓ 분석 결과 : 주요 품목 수급 충격 발생 사례를 고려한 경제적 가치는 연간 최대 약 5.9 조 원 규모



시나리오 S1

주요 곡물 (밀/콩) 수입량 감소

수입량 전년 대비
5%, 10%, 15%, 25% 감소 가정



참고 사례

2000년대 후반 애그플레이션 발생,
국제 곡물 가격 상승
전년대비 수입량이
식용 밀 15.5%, 사료용 옥수수 21.2%,
채유용 콩 20.2% 감소



밀 / 콩 수입량 5~25% 감소 시

2조 3,265억 ~ 4조 1,367억 원



시나리오 S2

국내 쌀 생산량 감소

생산량 전년 대비
10%, 15%, 20% 감소 가정



참고 사례

'80년 냉해, '10년 태풍 피해로
국내 쌀 생산량 감소
'80년 쌀 생산량은 전년 대비 36.6% 감소,
'10년 태풍피해로 쌀 생산량이
전년 대비 12.6% 감소



쌀 생산량 10~30% 감소 시

3,995 억 ~ 2 조 2,830 억 원



시나리오 S3

국내 돼지 사육 마릿수 감소

사육 마릿수 전년 대비
5%, 10%, 15% 감소 가정



참고 사례

'10년 구제역 발생에 따른
돼지 사육 두수 감소
전체 사육 두수(약 988만 마리)의
33%인 332만 마리 매몰 처분.
'11년 3월 기준 돼지 사육 두수는
약 700만 마리로 급감



돼지 사육 마릿수 5~15% 감소 시

6,860 억 ~ 2 조 559 억 원



사회적 비용 (소비자 접근성 보장 가치) = [생산자 총수입 증가분] - [소비자 지출 증가분]

11

3-3. 식량안보 이외 공익 기능 가치

✓ 분석 방법 : 환경재 및 생태 서비스 평가에 폭 넓게 활용되는 대체비용법 적용

④ 분석 결과 : 식량안보 외 농업의 공익적 기능 경제적 가치는 연간 약 21 조 원 내외로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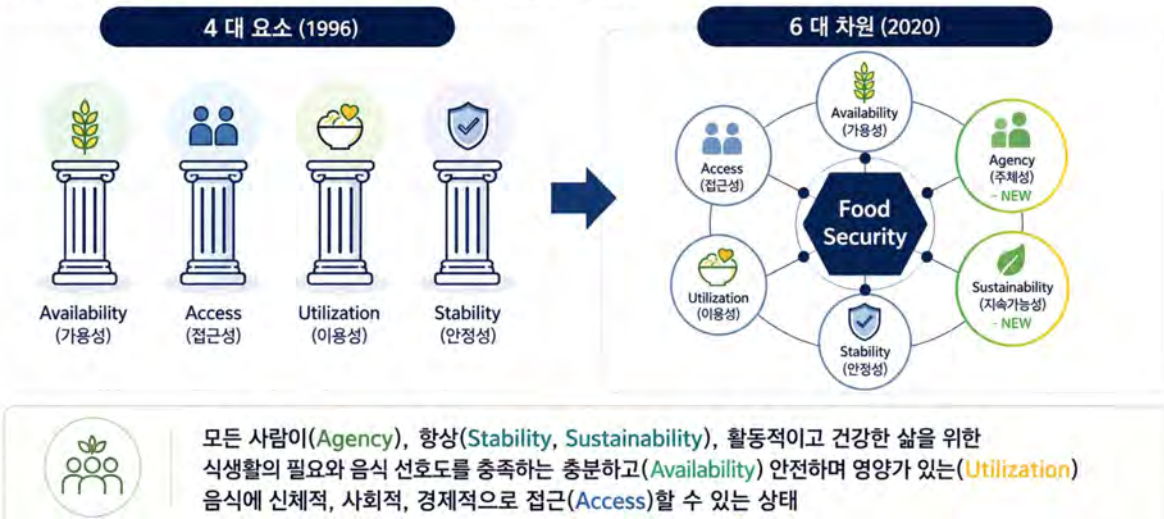
기능	논 (억 원)	밭 (억 원)	농업용 저수지 등 (억 원)	전체 (억 원)
홍수조절	18,774	5,349	33	24,155
지하수 함양	25,105	1,109	0.0	26,214
기온 변화 완화	22,742~27,270	9,000~10,926	0.0	31,742~38,196
대기 정화	39,768	38,858	0.0	78,626
토양 유실 저감	3,008	0	0.0	3,008
유기성 자원 소화	10,998	10,747	0.0	20,390
수질 정화	24,793	0	0.0	24,793
소계	145,188~149,716	65,063~66,989	33	208,928~215,382

12

02 한국형 식량안보 지표 개발 결과

4. 식량안보 개념을 지표에 어떻게 반영하지 ?

FAO 는 식량안보의 개념을 ‘4 대 요소’에서 ‘6 대 차원’으로 확장



4. 한국형 식량안보 지표



11

4-1. 지표별 가중치 계측 결과 (상위 10 개 세부지표)

* 보조지표 (지속가능성 측) 제외



축별 가중치는 국내 공급 기반 (0.602) > 식량 접근성 (0.219) > 해외 도입 기반 (0.179) 순
국산 식품 공급률 단일 지표가 전체 가중치의 약 30% 차지



12

4-2. 보조지표 (지속가능성 축) 가중치 계측 결과



13

5-1. 식량안보 지수 계측 결과 : 연도별 지수 추이



14

5-2. 식량안보 지수 계측 결과 : ‘신호등’ 방식 분석



주 : 2022년 기준, 지표 특성에 따라 절대 임계치 방식, 과거 추세 방식 적용

15

5-2. 식량안보 지수 계측 결과 : IPA 분석



16

6. 식량안보 가치와 지수의 활용 ?

식량안보의 공익적 가치와 식량안보 지수는 정책 설계, 모니터링, 취약요인 점검에 활용 가능

① 주기적 점검 및 개편 필요

시장, 정책, 기후
여건이
계속 변화하므로
지표와 가중치는 고정
불변이 아님
→ 정기적인 재검토
필요

② 데이터 체계의 축적과 표준화

연속적인 모니터링과
활용을 위해
지표 데이터의 주기적
축적·관리 체계 필요

③ 정책 우선순위 도출

지수값, 항목별 가중
치,
신호등·IPA 분석을
통해
정책 우선순위와 취약
요인을 식별

17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chrhew@krei.re.kr

발제 ②

식량안보 위기 대응 시스템 구축을 위한 과제

승준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곡물경제연구실장



식량안보 가치와 현주소,
대응 방향 정책토론회

식량안보 위기 대응 시스템 구축을 위한 과제

승준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6년 8월 12일

Cont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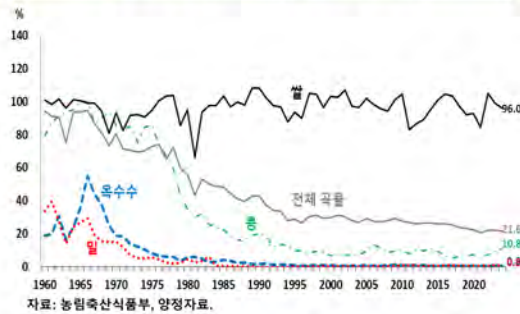
- Ⅰ 식량안보 위기 대응 시스템 구축 필요성
- Ⅱ 주요국의 식량안보 위기 대응 전략
- Ⅲ 시스템 구축 방안과 과제

I. 식량안보 위기 대응 시스템 구축 필요성

식량 자급률 저위 현상 지속, 쌀 제외한 주요 곡물 수요 대부분 해외 의존

- 2024양곡연도 전체곡물 자급률 21.6%, 쌀 자급 기반 유지, 콩 자급률 10.8%, 밀, 옥수수는 1% 수준
- 사료용을 제외한 전체 식량자급률은 47.9%, 콩 37.4%, 밀 1.5%, 옥수수 4.3%
- 2024년 주요 곡물(밀, 옥수수, 콩) 수입액은 총 농업생산액의 13.0% 해당하는 수준

주요 식량작물 자급률(1960~2024양곡연도)



농업생산액과 곡물수입액 (202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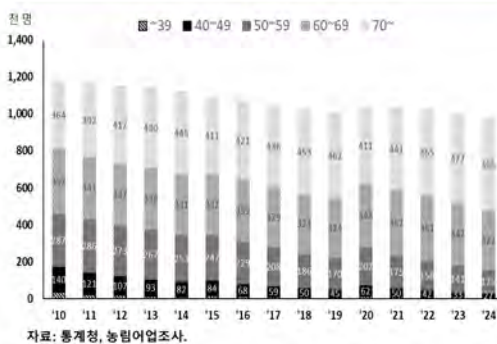
3

I. 식량안보 위기 대응 시스템 구축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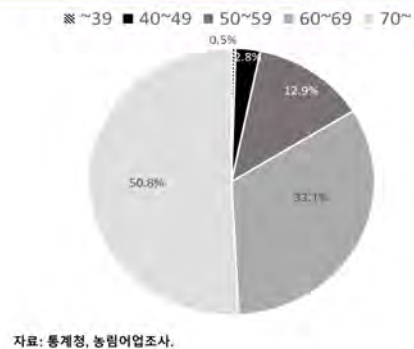
농업 인력 세대 교체 지연, 농가 고령화로 미래 농업 생산 잠재력과 식량안보 위협

- 농업인 평균 연령 65세 상회, 2024년 39세 이하 농업인 비중 전체 농업인의 0.5%

경영주 연령별 농가 수(2010~2024년)



경영주 연령별 농가 비중(2024년)



4

I. 식량안보 위기 대응 시스템 구축 필요성

기후변화, 전쟁 등 국제시장 불안요인 상존에 따른 식량보호주의 확산과 식량안보 위기

- 2000년대 후반 애그플레이션: 기후변화, 바이오연료 생산 확대, 수출제한조치
- 2020~2021년: 코로나-19에 따른 공급망 위기(국경 봉쇄, 물류 제한, 운송 차질, 노동력 부족 등)
- 2022년: 러-우 전쟁 등 지정학적 문제로 인한 위기(흑해 항구 접근 제한, 수출제한조치 57건)

국제곡물 시장의 불안요인 상존



세계 식량위기 사례



5

I. 식량안보 위기 대응 시스템 구축 필요성

‘식량안보 위기’ 정의 관련 동향

- 최근 발의된 일부 법령안에서 ‘식량안보 위기’에 대한 정의를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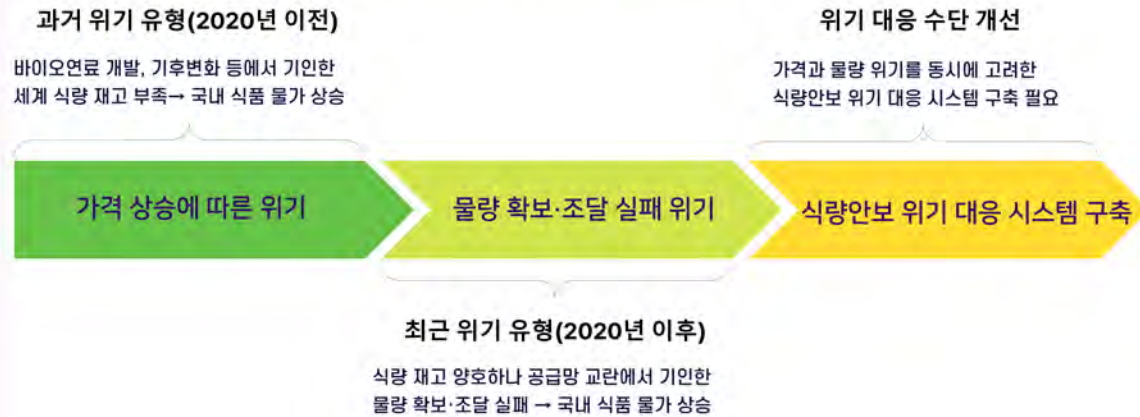
최근 발의 법안에서의 식량안보 위기 개념

법안명	식량안보 위기의 정의
「식량안보 특별법안」 (윤준병 의원, 2023.6.29.)	국내외 식량의 공급 및 가격의 급격한 변동이나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식량이 안정적으로 공급되지 아니하여 국민의 식생활에 심각한 지장이나 위해를 초래하여 국가의 긴급한 대처가 필요한 상황
「식량안보법안」 (서삼석 의원, 2025.9.17.)	국내외 식량의 공급 및 가격의 급격한 변동, 자연재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식량안보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고 국민의 식생활에 심각한 지장이나 위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국가의 긴급한 대처가 필요한 상황
「식량안보 기본법안」 (윤준병 의원, 2025.9.29.)	자연재해, 세계 곡물시장의 불안정, 전쟁 등 대내외적인 여건 등에 따른 식량의 공급 및 가격의 급격한 변동으로 식량안보를 확보할 수 없는 상태로서 식량이 안정적으로 공급되지 아니하여 국민의 식생활에 심각한 지장이나 위해를 초래하여 국가의 긴급한 대처가 필요한 상황

6

I. 식량안보 위기 대응 시스템 구축 필요성

식량안보 위기 유형 변화를 반영한 대응 시스템 마련 필요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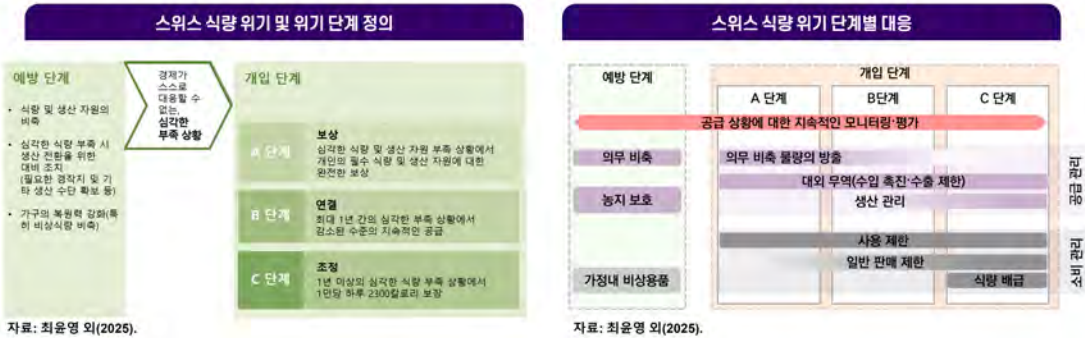
Contents

- I 식량안보 위기 대응 시스템 구축 필요성
- II 주요국의 식량안보 위기 대응 전략
- III 시스템 구축 방안과 과제

II. 주요국의 식량안보 위기 대응 전략

+ 스위스의 식량 위기 대응 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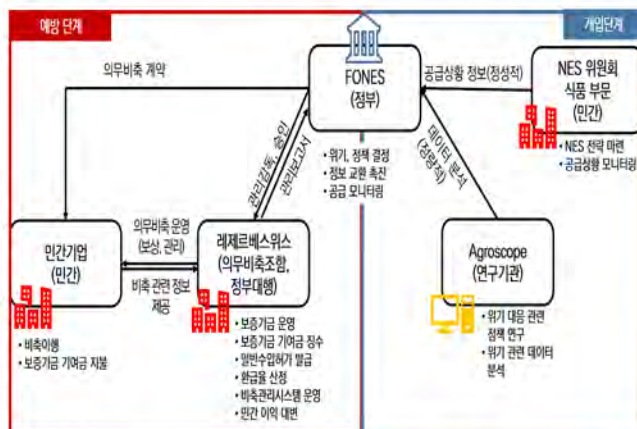
- 도입배경 : 농지 희소, 불리한 농업생산조건, 낮은 식량자급률(53%), 높은 수입의존도
→ 1935년부터 민간비축을 주요 수단으로 하는 위기 대응 접근 방식 채택·운영
- 법적근거 : 「연방헌법」(제102조) 연방정부는 “정치적 또는 전쟁 위협으로 민간경제가 스스로 대처할 수 없는 심각한 부족 상황에서 필수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을 보장”, 「국가경제공급법」 식량 위기 정의 및 대응 시스템 구체적 운영방식



9

II. 주요국의 식량안보 위기 대응 전략

+ 스위스의 식량 위기 대응 시스템 운영 주체 및 방식



- 의무비축 대상기업: 필수 식량(설탕, 쌀, 커피, 식용유 및 오일, 곡물, 사료곡물)을 일정량 이상 수입·판매하는 기업 (식품·사료 부문 110개사)
- FONES가 지정한 의무물량 상시 비축·관리·보고

품목	수요충족 (개월)	비축물량 (톤)
설탕	3	53,996
쌀	4	16,400
식용유 및 지방*	4	35,580
커피	3	18,750
듀럼 밀	4	23,000
일반 밀	4	160,000
사료 에너지/단백질 공급원	2-3	387,450
합계	-	695,176

10

II. 주요국의 식량안보 위기 대응 전략

● 일본의 식량공급곤란사태대책 시행 배경

- 도입 배경: 식량 수급 리스크 증대 → 예상하지 못한 식량 위기의 사전 방지 및 조기 해소 대책 필요성 대두
● 법적 근거: 2025년 4월 1일 「식량공급곤란사태대책법」 시행

정부 체제

예상치 못한 상황 발생 시 정부 대응이 필요하나,
정부의 의사결정 및 지휘·명령 체제와 정비에 관한 제도적 장치 부재

【예상치 못한 상황 발생 시 필요한 대책(예시)】

소비자에 대한 정보 제공

소비자의 불안 해소를 위한
정보 제공 등
【소비자청】

수입 확보

외교 대응, 통관 절차의 신속화와 안정성 확보 병행, 관세 경감·면제 등

물류 확보

식량 및 생산자재의 운송
원활화, 보관시설 확보 등
【국토교통성】

기존 법제도

예상치 못한 상황 대응과 관련하여 기존 법제도는
대상 범위가 제한적이고 조치 내용이 불충분하다는 한계 존재

(국민생활안정긴급조치법)

일반 물가가 급등하는 경우에만 대응 가능, 출하에 관한 업종 간 배분 조정 불가

(매점매석 방지법)

매점이나 판매 기점이 이루어지는 등 문제가 명백한 경우에만 대응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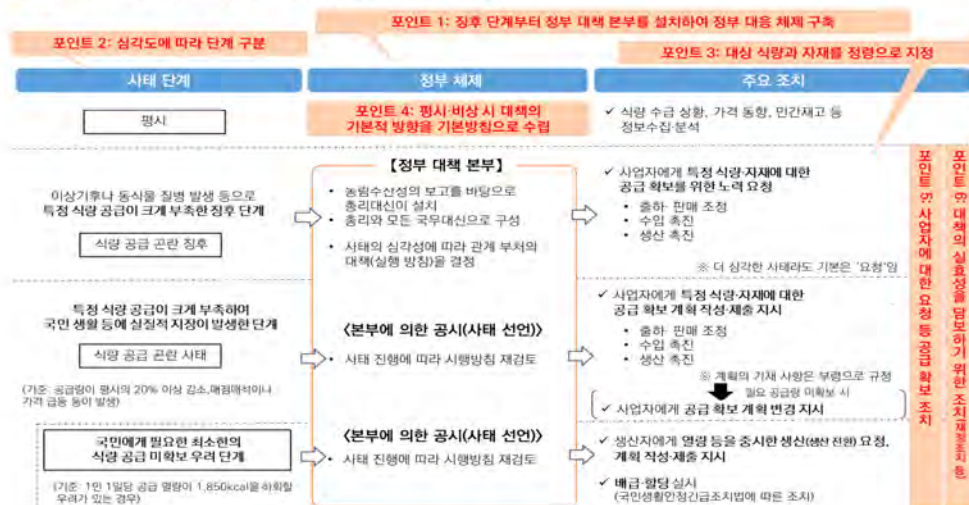
(식량법)

쌀만 해당

11

II. 주요국의 식량안보 위기 대응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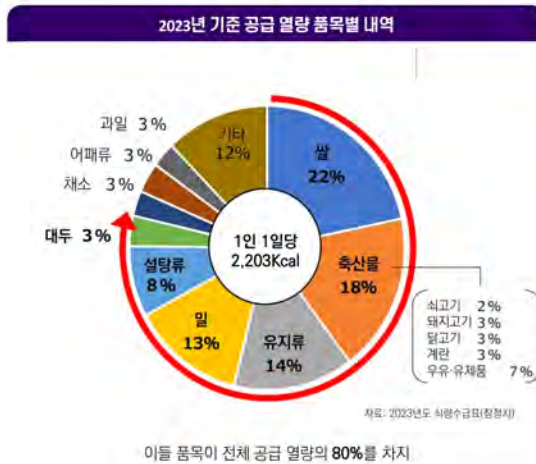
● 일본의 식량공급곤란사태대책의 개요



12

II. 주요국의 식량안보 위기 대응 전략

● 대상 식량과 자재를 정령으로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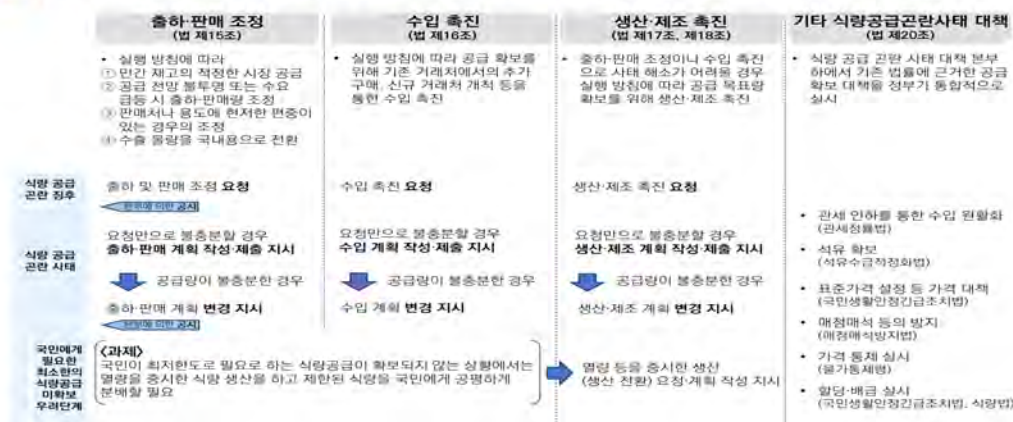


13

II. 주요국의 식량안보 위기 대응 전략

● 비상 시, 식량 공급 확보를 위한 조치

- 출하·판매, 수입, 생산 요청에 따른 사업자의 경영 리스크 완화와 정부 대책 유인 수단으로 인센티브 제공
- 식량공급 확보를 위한 정보 수집 과정에서 보고, 현장조사, 계획 수립 지시 등을 거부·위반 시에는 벌칙 부과



14

Contents

- Ⅰ 식량안보 위기 대응 시스템 구축 필요성
- Ⅱ 주요국의 식량안보 위기 대응 전략
- Ⅲ 시스템 구축 방안과 과제

Ⅲ. 시스템 구축 방안과 과제

식량안보 위기의 정량적 판단 기준 마련

- ❖ 위기단계 : 물량과 가격이 모두 안정 상황인 '0'단계('예방' 혹은 '평시'), 위기 발생 이후는 1~3단계로 설정 검토
- ❖ 판단기준 : 효율적인 식량안보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해 식량 위기 단계를 정량적으로 판단 필요
 - 식량 공급량 감소율, 1인당 1일 섭취 열량을 고려한 2단계와 3단계의 정량적 판단 기준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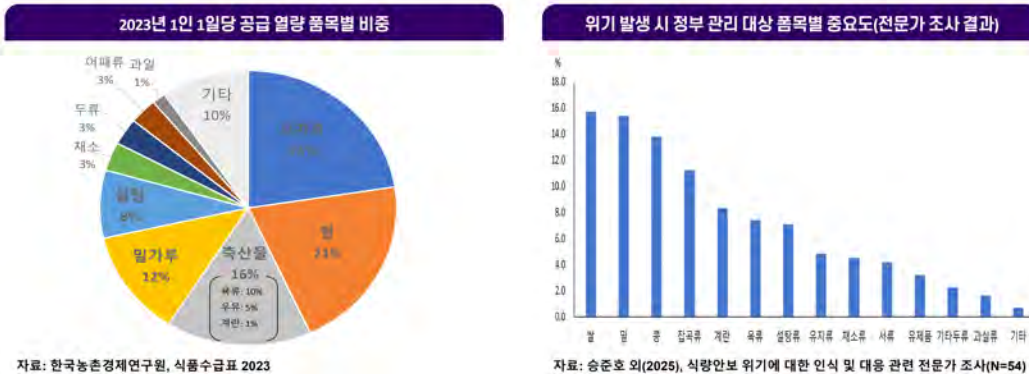
식량안보 위기 판단을 위한 공급량 감소 기준(안)

위기단계	위기 상황	판단 기준	비고
0단계	물량 공급과 가격 모두 안정	-	-
1단계	물량 공급은 안정, 1~2개 품목의 일시적 가격 상승	-	-
2단계	최대 1년간 1~2개 품목의 물량 공급 문제 지속, 가격 상승 장기화	해당 품목의 공급량 평년 대비 20% 이상 감소	1980년 냉해로 쌀 공급량 전년 대비 21.6% 감소
3단계	1년 이상 2개 이상 품목의 심각한 물량 부족, 1인당 1일 최소 필요 열량 보장 불가	1인당 1일 공급 열량 1,850kcal를 하회	2024년 1인당 1일 섭취 열량 1,865kcal

표. 시스템 구축 방안과 과제

국민 경제와 식생활에서 중요한 농산물과 가공품을 특정 대상 품목으로 설정·관리 필요

- ☑ 전체 공급 열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대상 설정 검토
- ☑ 1인당 1일 공급 열량 비중 고려하면 식량 위기 시 특정 대상 품목은 유지류, 쌀, 축산물, 밀가루, 설탕, 두류가 적합,
→ 2023년 해당 품목들의 공급 열량 전체의 80% 이상 차지



17

표. 시스템 구축 방안과 과제

식량안보 위기 대응 시스템 운영 주체는 단계별로 설정 검토

- ☑ 식량 위기 대응위원회: 1~2단계 위기 공시, 수입 및 생산 촉진 요청, 비축물량 방출 등 식량 공급 확대 대책 추진
- ☑ 식량 위기 대응본부: 3단계 위기 공시, 최소 열량 보장을 위한 증산 지시 및 추진, 식량 배급 및 가격 통제

식량안보 위기 대응 시스템 운영 주체 및 역할(안)

위기 단계 구분	위기 상황	운영 주체	역할
1단계	물량 공급은 안정, 1~2개 품목의 일시적 가격 상승	<‘식량 위기 대응위원회’> -위원장: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구성: 관계부처(재정경제부, 외교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장급, KREI, aT, 학계, 관련 업계, 관련 공공기관 등	<식량 공급 확대 대책 추진> -위기 단계 공시 -국내외 위기 상황 모니터링
2단계	최대 1년간 1~2개 품목의 물량 공급 문제 지속 (해당 품목의 공급량 평년 대비 20% 이상 감소), 가격 상승 장기화		-수입 및 생산 촉진 요청 -비축물량 방출 -소비자 정보제공, 사재기 억제
3단계	1년 이상 2개 이상 품목의 심각한 물량 부족 (1인당 1일 공급 열량 1,850kcal를 하회), 1인당 최소 필요 열량 보장 불가	<‘식량 위기 대응본부’> -본부장: 국무총리 -구성: 관계부처(재정경제부, 외교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장관, KREI, aT, 학계, 관련 업계, 관련 공공기관 등	<법정부 대책 추진> -위기 단계 공시 -최소 열량 보장을 위한 증산 지시 -식량 배급 실시 -가격 통제 -소비자 정보제공, 사재기 억제

18

표. 시스템 구축 방안과 과제

식량안보 위기 대응 시스템 체계(안)

구분	0단계 (평시)	1단계 (위기 징후)	2단계 (위기 발생)	3단계 (위기 심화)
위기 징후 및 대응 방향	•물량 공급 안정 •가격 안정 •(가격) 국제곡물 EWS지수 안정 단계	•물량 공급 안정/부족 징후 •1~2개 품목의 일시적 가격 상승 •(가격) 국제곡물 EWS지수 주의 단계	•최대 1년간 1~2개 품목의 물량 공급 부족 •1~2개 품목의 일시적 가격 상승 •(물량) 해당 품목의 공급이 전년 대비 20% 이상 감소 •(가격) 국제곡물 EWS지수 경계/심각 단계	•1년 이상 2개 이상 품목의 심각한 물량 공급 부족 지속 •1인당 최소 필요 열량 보장 불가 •(물량) 1인당 1일 공급 열량이 1,850kcal을 하회 •(가격) 국제곡물 EWS지수 경계/심각 단계
대응 방향	•0단계(평시) 유지 •정부 개입 최소화를 위한 공급량 강화	•기존의 공급 수준 유지 •기본 소비자 물가 보장	•기본 대비 물어온 수준의 물량을 지속 공급 •생산수입 판매 조정으로 가격 안정 유도	•1인당 1일 최소 필요 열량 보장
주요 대책	•공급가격 모니터링 •효율적인 비축제도 운영 •수입 다변화: 해외농업개발, 협력체계 구축 •농지중지 비축 등 생산기반 확보 ※위기 단계별 상황 상황 시뮬레이션 연습	•공급가격 모니터링 강화 •물하판에 조정, 비축물량 방출 검토 •수입 촉진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 및 홍보 ※업체생산자에 공급 확보 노력 요청	•공급가격 모니터링 강화, 위기 시나리오 분석 •물하판에 조정, 비축물량 방출 •수입/생산 촉진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 및 홍보 ※업체생산자에 공급 확보 계획 제시	•공급가격 모니터링, 위기 시나리오 분석 •국내 식량 증산 •식량 배급 •가격 규제 및 통제 ※생산자에 생산 요청 및 계획 제시
대응 주체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위기대응위원회 - 위원장: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구성: 관계부처(기재부, 외교부, 해수부, 식약처) 국장급, KREI, aT, 학계, 관련 업계 기관	•식량위기대응위원회 - 위원장: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구성: 관계부처(기재부, 외교부, 해수부, 식약처) 국장급, KREI, aT, 학계, 관련 업계 기관	•식량위기대응본부 - 본부장: 국무총리 - 구성: 관계부처(기재부, 외교부, 해수부, 식약처) 장관, KRB, aT, 학계, 관련 업계, 관련 공공기관 등
관계기관 역할		•기재부: 매곡매곡 안착 및 모니터링, 물가안정 대책 추진, 물류시 지원 등 경제정책 총괄 •외교부: 주요 식량 생산국 및 수출국 등과 협력체계 구축 •해수부: 주요 식량 수입 관련 시, 국가물수신작 운영 및 주요 수출국 정치 형안 물류 통관 파악 등 •식약처: 주요 수입 지원 등 위기 발생 시 국내 통관단계 수입검사 신속 처리 •KREI: 식량 수급 및 가격정보 수집/분석, 식량 위기 시나리오 모형 운용 및 분석 •한국농어촌공사: 해외농업개발사업 현황 모니터링, 확보 물량의 국내 반입 시행		

19

표. 시스템 구축 방안과 과제

식량안보 확보 및 위기 대응 시스템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

🔗 식량안보 위기 대응 시스템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수적

→ 평시 생산기반 확보에서 위기 시 증산 및 식량 배급에 이르기까지 식량안보 관련 기존 법률을 적용하는데 한계

식량안보 관련 법률 현황

법령명	관련 조문 및 제명	식량안보 위기 대응 시스템 적용 시 한계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7조: 농산물과 식품의 안정적 공급 제14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제23조: 식량과 주요 식품의 안정적 공급	· 비축, 농지 이용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나, 구체적 운영 사항 부재 · 비상시 식량 증산, 유통제한 등의 시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강제성 결여
물산업 육성법	제16조: 비축사업의 운영	· 비축사업의 구체적 운영 사항 부재
농지법	제3조: 농지에 관한 기본이념	· 농지의 확보, 관리 내용 부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조: 농림업관측 제13조: 비축사업 등	· 국제 곡물을 포함한 관측사업 근거, 식량 위기 대응 시스템과 괴리 · 비축사업의 구체적 운영 사항 부재
양곡관리법	제3조: 정부관리양곡의 수급계획 수립 제10조: 공공비축양곡의 비축운영	· 공공비축양곡의 구체적 운영 사항 부재
해외농업산업개발법	제5조: 해외농업자원개발종합계획의 수립 제33조: 비상시 해외농업 산업자원의 반입명령	· 수출국의 수출 제한 시 해외농업개발자가 반입 명령 이행의 한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비축대상물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5조: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 비상사태에 대비한 비축 물자의 구체적 범위가 제시되지 않고 추상적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안정 지원 기본법	제19조: 공급안정 안정화 선도사업자의 선정 등 제25조: 경제안보품목의 비축관리 지원 제22조: 수입국가 다변화 등 지원 제28조: 위기 대응 매뉴얼의 작성·운용	· 식량 이외의 다양한 대상을 포함함에 따라 식량안보에 집중된 효과적인 위기 대응이 어려움

20

Ⅲ. 시스템 구축 방안과 과제

식량안보법 제정 시, 평시 식량안보 확보와 위기 발생 이후 식량공급 수단을 규정 필요

- 📌 식량안보법 제정을 토대로 식량안보 위기 단계별 대책의 추진 동력 마련 필요
- 위기 징후부터 국민이 필요로 하는 최소 열량 공급이 불가능한 심각한 위기 단계에 이르기까지 효과적 대응 가능

식량안보법 제정 시 주요 고려 사항

구분	고려사항
평시 (0단계)	- 농지를 비롯한 수리시설의 보전과 관리에 관한 사항 - 종자 산업의 보호와 육성 관련 사항 - 식량안보 위기에 대비한 효율적인 비축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 수입선 다변화 및 해외농업생산기반 확보 노력 - 식량자원 관련 국제협력 강화에 관한 사항
위기 발생 (1~3단계)	- 위기 시, 국가의 안정적 식량 공급 확보에 관한 사항 - 국민의 식량접근권 보장에 관한 사항 - 대책 본부 설립 및 운영 관련 사항 - 식량 위기 대응 시스템 구축과 운영에 관한 사항 - 수입 및 생산 촉진, 증산, 비축물량 방출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 - 업계·생산자를 대상으로 공급 확보 노력에 대한 요청 또는 지시에 관한 사항

21

Ⅲ. 시스템 구축 방안과 과제

식량안보 위기 대응 기금 조성 검토

- 📌 필요성: 식량안보 위기 발생 시 공급물량 확보를 위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재원 마련
- 중앙정부 및 지자체, 민간업계 등이 참여하는 '식량 위기 대응 기금' 조성 검토
- 📌 용도: 식량비축 및 방출과 수입 조정을 통한 시장안정 대책, 식량 위기 시 긴급 수급 조치, 증산 및 생산기반 보수, 복구 지원, 위기 대응 관련 연구 등으로 설정
- 식량안보 위기 발생 시, 긴급 도입, 증산 전환 등 최대한의 곡물 확보에 활용

22



감사합니다

MEMO

MEMO

MEMO

MEMO